

검 토 보 고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2항에 따라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특별회계에 편성하는 세입·세출 예산 과목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.

2. 주요내용

- 세입 예산 재원의 세분화(안 제2조)
- 세출 예산 내용의 세분화(안 제3조)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 제9조 및 학교급식법 제3조 【붙임 1】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기 타
 - 1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 - 2) 입법예고 : 2017. 9. 20. ~ 10. 10.(20일간)
 - 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: 【붙임 2】

4.

검토의견

-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2항」에 의거 설치된 예산군학 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예산과목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으로써 안 제2조 세입 예산재원에서 “일반회계 전입금등”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
- 본조례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